

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

배포날짜 2017. 10. 23(월)

2017년 10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월 23일(월) 10시 이후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효율기술실	담당자	안세희 대리(Tel. 031-260-4249)
배포부서	홍보실	담당자	안영선 대리(Tel. 031-260-4389)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사후관리, 온라인 매장까지 확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온라인쇼핑협회·17개 주요 유통사와
 협업하여 온라인 매장 집중 점검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이달부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17개 주요 유통사와 협업하여 효율관리제도 사후관리 대상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유통매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매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효율관리기자재를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매장의 제품 판매 전 효율측정 신고 여부, 제품의 효율등급 광고 여부, 효율등급 표기의 정확성 등 효율관리제도 대상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구매해서 직접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달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의 협업을 토대로 17개 주요 온라인 유통사*가 자발적으로 효율관리제도 사후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성역 없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 17개 주요 온라인 유통사 : 롯데하이마트,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SSG(신세계, 이마트), 쿠팡, 티몬, 홈플러스, AK몰, 갤러리아몰,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닷컴

또한 정부 주도적 점검에서 벗어나 온라인 유통매장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효율 정보 제공 및 불법 제품 근절에 대한 필요를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단순 적발과 처분만의 목적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들까지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제도 준수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첫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매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 달 계도기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며, 효율관리제도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제도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첨 부 :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정보 제공 안내 1부.
2.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정보 제공 안내 1부. 끝.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031-260-4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정보 제공 안내

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업자는 **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며, 제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내용을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총27개 품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일반, 드럼),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EHP,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27개 품목)

● 관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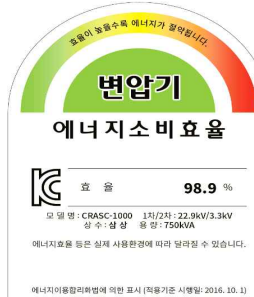
● 제품신고(의무)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체(수입업자)는 판매 전 효율을 측정하여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제품신고·검색 / 규정 다운로드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 라벨표시(의무) 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올바르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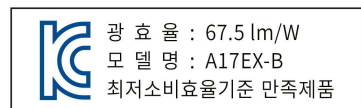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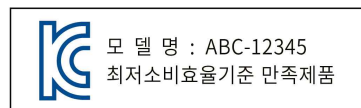
(냉장고,세탁기 등)



(변압기,전동기 등)



(전열기기 등)



(램프, 선풍기, 어댑터 등)

※ 예시와 같이 효율등급라벨은 품목별로 형태가 상이합니다 (세부내용 규정 참조)

● 제품광고(의무)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제품 광고를 하는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품사진·광고에 효율등급라벨 표시**)

● 벌칙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내용	과태료·벌금	법적근거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제품 생산·판매금지 명령 위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4조
판매 전 효율등급 미신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76조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미포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8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미표시·거짓표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8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정보 제공 안내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 및 표시**를 하여야하고, 그 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은 **임의로 신고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총21개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21개 품목)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총16개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전자레인지,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16개 품목)

● **관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19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부고시)

● **제품신고(의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판매 전** 대기전력을 측정하여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품신고·검색 / 규정 다운로드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 라벨표시 (의무)

구분	구분	신고	라벨	라벨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21품목)	경고표지대상제품(16품목)	의무	기준미달시 의무부착	
			기준만족시 임의부착	
	서버 등 5품목	임의	기준만족시 임의부착	

● 벌칙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내용	과태료·벌금	법적근거
대기전력경고표지 미표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74조
판매 전 경고표지대상제품 미신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76조
대기전력우수제품 거짓표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76조
대기전력 기준치 미달	시정명령(행정처분미이행시 5백만원이하의벌금)	제21조 제76조